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 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군산시장 <u>공</u> 경 시 <mark>관한</mark> 행위한

2014년 11월 13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57호

####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 규모별 및 어구 명칭별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및 어구명 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지정·승인 제한) ① 패류. 복합.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은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ha 이상인 자에 한하여 어장관리선을 지정(승인)한다.

② 해조류 양식어장은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2ha 이상인 자에 한하여 어장관리선을 지정(승인)한다.

③ 동일 면허지내에서 공유 또는 행사한 면적이 모두 1ha (단, 해조류 2ha)에 미달한때에는 공유자 또는 행사자의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 그 대표자에 한하여 어장관리선을 지정(승인)한다.

제4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① 제2조"별표"와 어장관리선의 척수기 준에 불구하고 어장 관리선은 1인 1척(수협 또는 어촌계 제외) 이내로 제한 한다. 다만 해조류양식 어장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ha이상인자에 한하여 2척까지 허용한다.

②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으로 관리선 지정이 필요하거나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어장관리선의 기준척수(별표 1) 범위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의 경우 50ha이상인 경우는 2척까지 지정 가능함. (이 경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별표1의1 부도 20-1, 20-2의 어구형태로 사 용하여야 하며 어구 사용량은 1통에 한한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 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어장관리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군산시 고시 제2008-634호 어장 관리선의 척 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된 어 장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군산시 어장관리선척수기준에 관한 고시(제 2008-634호, 2008. 5. 23)는 폐지한다.

군산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최 센 때문이

2014년 11월 13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71호

## 군산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 폐지규칙

군산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군산시장 <u>공</u> 경 시 <mark>관한</mark> 이유를

2014년 11월 13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72호

####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 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 2. 도면
-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 예시 등

#### 1.안내표시판 예시

가. 도시/근린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A형 또는 B형

#### A형



1) 규격: 1200\*900mm(가로형)

2) 재질: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3) 글씨체 : 국문(윤고딕340, 윤고딕310), 영문(윤고딕340)

4) 색상: 바탕색-공원색(c80,y100) 금연로고-흰색,적색(m100,y100) 도면-연두색(c80,y100), 흰색,검정색

5) 내용:

- 좌측 : 금연표시,금연로고표시,

- 우측: 금연구역표시, 군산시청휘장표시

## B형



1) 규격: 1200\*900mm(가로형)

2) 재질: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3) 글씨체: 국문(윤고딕340, 윤고딕310), 영문(윤고딕340) 4) 색상: 바탕색-나무색(c40,m70,y100,b50)

4) 색상: 바탕색-나무색(c40,m70,y100,b50) 금연로고-흰색,적색(m100,y100)

도면-나무색(c40,m70,y100,b50), 흰색,검정색

5) 내용 :

- 좌측: 금연표시,금연로고표시,

- 우측: 금연구역표시, 군산시청휘장표시



# 금연공원 이 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군 신 시

#### 다. 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 군 신 시





마. 특화거리 금연구역

1) 규격: 400\*800mm(세로형) 2) 재질: 포멕스(5mm)

3) 글씨체: 국문(윤고딕340, 윤고딕310), 영문(윤고딕340)

4) 색상: 바탕색-청색(c100,m30) 금연로고-흰색,적색(m100,y100) 군산시청휘장-지정색

5) 내용:

- 상단: 금연 및 금연마크표시

- 중앙: 금연구역 및 과태표부과내용표시

- 하단: 군산시청 휘장표시

1) 규격: 400\*800mm(세로형) 2) 재질: 유포지스티커(무광코팅)

3) 글씨체: 국문(윤고딕340, 윤고딕310), 영문(윤고딕340)

4) 색상: 바탕색-청색(c100,m30) 금연로고-흰색,적색(m100,y100) 군산시청휘장-지정색

5) 내용:

- 상단: 금연 및 금연마크표시

- 중앙: 금연구역 및 과태표부과내용표시

- 하단 : 군산시청 휘장표시

# 2. 안내스티커



No Smoking

이 구역은 간접흡연 피해자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



1) 규격: 400\*150mm(가로형)

2) 재질: 코팅스티커

3) 글씨체: 국문(윤고딕340, 윤고딕310), 영문(윤고딕340)

4) 색상: 바탕색-흰색

금연로고-흰색,적색(m100,y100)

군산시청휘장-지정색

5) 내용:

- 좌측: 금연 및 금연마크표시

- 우측: 금연구역 및 과태표부과내용표시

- 우측하단: 군산시청 휘장표시

#### 2. 표시방법

-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3. 설치방법

-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4. 관리기준

- 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 나. 안내표지판 색이 탈색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